

# '97 양계시책

본고는 농림부가 개정한 '97농림사업시행지침서 내용 중 양계분야만을 발췌. 요약한 것이다.

-편지자주-

## 닭 경쟁력 강화 사업(자율)

-농림부 축산경영과-

### 1. 목적

- 양계경영주체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종합지원하여 생산비절감 양계업 경쟁력 제고
- 사육화경을 개선하여 품질개선과 위생수준 향상 도모

### 2. 추진방향

- 가족농 중심의 양계 전업농을 중점 육성
- 기반시설, 축사시설, 자동화 시설, 환경제어시설 및 각종 기계기구 등을 종합지원
- 정부지원이 사육수수 증가와 연결되지 않도록 증축보다는 시설개선 및 현대화에 우선지원

### 3. 년차별 지원계획(표1)

### 4. '97년도 사업시행요령

#### <사업개요>

가. 사업내용

- 사업기간 : 1년
- 지원내용

표1. 연차별 지원계획

(단위:백만원)

구분	94까지	'95	'96	'97	'98	99-2004	합계	
사업량	개소 508	526	765	300	200	400	2,699	
사 국 고 국 고 용 자 업 기 금 보 조 기 금 용 자 비 지 부 담	계	68,245	79,273	109,286	109,289	98,600	528,700	990,404
	국고	-	-	-	-	-	-	-
	국고용자	11,320	-	-	-	-	-	11,320
	기금보조	-	-	-	-	-	-	-
	기금용자	32,610	52,900	76,500	76,500	69,000	370,000	677,510
지부담	24,315	26,373	32,786	32,789	29,600	158,700	301,574	

-기반시설 : 용수개발, 부지정지, 도로개설, 전기인입시설 등

-사육시설 : 축사 신·증·개축, 급이·급수시설, 환경개선 시설(자동환기장치, 열풍기, 온도조절기 등), 각종 축사내부시설, 부화시설(건물, 부화 장비 등)

-유통시설 : 계란집하장 시설(건물, 운반장비, 계란 선별기 시설 등), 계란 저온저장 시설(건물, 냉장시설 등), 계란가공시설

○기계, 기구, 장비 : 트랙터, 로타, 소독장비, 부산물처리장비 등

※부지구입 및 가축구입비 등 경영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축산분뇨처리시설은 별도의 공해방지 시설사업으로 지원

○지원대상

-닭 사육농가 또는 종계장, 부화장 경영자

-양계업을 하는 영농조합법인, 축협, 자생적인 협업

체 등

○지원규모

-농가 : 호당 3~5억원 이내(육계 3억원, 산란계 5억원)

-법인 : 자기자본의 200% 이내

-축협 및 공공기관 : 자기자본의 400% 이내

※단 종계장, 부화장, 계란집하장 시설 등은 사업규모, 생산능력 등을 감안하여 증액지원 가능

○지원조건

-재원 : 축산발전기금

-지원조건 : 5년거치 10년균분상환, 연리 5%

-지원비율 : 용자 70% 이내, 자담 30% 이상

나. '97사업비 (예산안) 내용

표2. '97사업비 (예산안) 내용

내 용	사업량	사 업 비(백만원)					
		합 계	축산발전기금			지방비	자부담
			소 계	용 자	보 조		
닭경쟁력 제고사업	300호	109,289	76,500	76,500	-	-	32,789

<추진체계>

가. 사업주관기관 : 시장·군수

나. 사업담당부서

○농림부 : 농림부 축산경영과(02-504-9434~5)

○시·도 : 도 축산과, 광역시 농정과(축산계)

○시·군·자치구 : 축산과 또는 농산과(축산계)

다. 사업시행

○추진방식 : 농어민 자율방식

○사업계획·수립 및 변경

- 사업대상자는 사업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  
-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즉시 시·군에 보고, 시장·군수는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변경하고 그 결과를 시·도에 보고

-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현지를 조사하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자금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.

<행정사항>

가. 사후관리

○사업주관기관은 사업의 목적 및 추진방향을 감안, 본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함.

○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지원된 자금을 타용도로 전용하여 지원자금의 회수 또는 취소된 자가 새로이 사업지원을 희망할 경우 축산발전기금운용규정에 의거 조치

○시·도(시·군·구)는 사업추진 실태를 연 1회 이상 종합 점검·평가하여 사업추진 및 관리상의 문제점을 개선보완 조치

○시·도지사 및 축협중앙회장은 지원자금이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(사업자금 집행 관리규정 및 사후관리지침에 의하여 조치) 기해야 함.

나. 보고

○시·도지사는 농림사업 평가실시요령(농림부 훈령 제825호, '95.7.26)에 의거 다음 사항을 농림부장관에 보고(대상자 선정 결과(3.10), 사업추진실적 보고(익년 2.10)

-별지 제1,2,3호서식(생략)

5. '98년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안내

가. 신청서 제출기관 : 시·군(읍·면), 농촌지도소

나. 대상자선정

(1)신청자격

<전업농, 종계, 부화업>

○양계업에 1년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

○시·도지사에 종계업, 부화업 등록이 되어 있고 생산실적이 있는 종계장, 부화장 경영자

<축협, 법인, 협업체 등>

○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축협조합

○영농조합법인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설립동기를 한 법인과 양계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5인이상 농가가 정관을 정하여 운영하는 협업체로서 1년이상 사업실적이 있고 총출자액이 1억원 이상, 구성원 1인의 출자액이 총출자액의 25%를 초과하지 않는 법인, 협업체

(2)선정 우선순위

<개별농가>

- ① 50천수 미만 사육농가로서 사육수수를 증가시키지 않고 시설을 대체하여 현대화, 자동화 하거나 기반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가
- ① 10천수 ~ 30천수 규모 사육농가
- ③ 30천수 ~ 50천수 규모 사육농가
- ④ 10천수이하 규모 사육농가
- ※ 동일 순위일 경우 아래 기준을 참고하여 우선 순위 선정
- ① 종계업, 부화업, 닭계열화사업에 참여하는 농가 - 계열사업 참여농가는 계열주체의 추천서 및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첨부
- ② 전업규모 이상을 가족노동력으로 사육할 수 있는 기술과 현대화된 자동시설을 갖출 수 있는 재력이 있는 자
- ③ 농과계 졸업자 또는 농민후계자로서 3년이상 양계업에 종사하고 있는자
- ④ 전산관리 등 경영의 현대화로 생산성을 기할 수 있는자
- ※ 경쟁력강화사업 대상자로 선정시 축산분뇨처리 시설이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함. (조합, 법인, 협업체 포함)
- <조합·법인·협업체>
- 조합·법인·협업체도 구성농가를 평가하여 상기사육규모별 우선순위 적용
- 구매, 출하, 방역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조직의 응집력이 큰 단체
- 공해문제 등으로 민원발생 소지가 적은 지역에서 양계업을 하고자 하는 단체
- 기술 수준이 높고 경영관리의 현대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단체
- ※ 조합, 법인, 협업체 등의 구성농가는 개별농가의 신청자격 여건에 적합하여야 하며, 동일순위에서는 개별농가의 우선순위(구성농가의 평균사육수수 기준)를 적용
- (3) 신청 및 선정절차
- 사업희망자는 농림사업 실시 규정 제12조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신청
- 시·군은 농림사업 실시규정 제15조~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

계열주체는 지원에 필요한 계열농가 내역을 시·군에 제출 → 시·군은 사업대상자 선정절차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

(4) 구비서류 : 농림사업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, 기타사항

○'97사업추진요령에 준하되 세부사업별 지원비율, 단가등 지원방법은 변경될 수 있음

## 가축계열화사업

-농림부축산경영과-

### 1. 목적

○전문경영 주체중심의 생산, 가공, 유통의 통합경영으로 양축농가는 일정소득을 보장받고 생산에만 전념토록 함으로써 생산비절감과 품질향상 등 안정적인 축산경영 도모

### 2. 추진방향

- 사전심사 강화 및 준비절차로 계열화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
- 계열참여농가에 대한 지원으로 계열사업 체계화
- 완전, 부분계열화 및 조합형계열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계열사업 추진

### 3. 연차별 지원계획 (표 3)

표3. 연차별 지원계획

구 분	'96 까지	'97~98	'99~2004	합 계
닭	16개소	4	3	23

### 4. '97년도 사업시행요령

#### <사업개요>

- 가. 사업내용설명
- 사업기간 : '97~'98
- 지원내용(표5)
- 대상축종 : 닭, 돼지

○가축계열사업형태 : 완전계열화, 부분계열화, 조합형계열화

○자금지원계열화: 농림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로부터 계열화사업자로 선정된 자

○자금지원방법

-사업비는 계열주체의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거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함(예산규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)

-이미 지원받은 업체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완료 되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 지원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도 신규사업 신청절차 및 방법에 의함.

-계열농가 생산시설은 돼지·닭경쟁력강화사업 또는 계열화사업에 포함하여 계열주체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, 계열주체를 통하여 지원할 경우 해당 시·도지사와 협의하여 대상농가를 선정하여야 하며, 계열농가가 이미 다른 축산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농가당 경쟁력강화사업 지원 한도 범위내에서만 지원함.

-계열농가가 계열주체를 통하여 생산시설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축종별 경쟁력강화사업의 지원내용과 융자조건에 의함.

○지원조건

-지원액:사업계획 기간내에 분할차등 지원

-지원비율:융자70%이내, 자담30%이상

-상환조건:5년거치 10년균분상환, 연리5~8%

※ 금리: 생산자단체 연리 5%, 기타 연리8%

나. '97 사업비(예산안)내용 (표4)

표4 '97사업비 (예산안 내용) (단위:개소, 백만원)

	신규사업		계속사업2년차		기존사업보완		계	
	사업량	사업비	사업량	사업비	사업량	사업비	사업량	사업비
닭(육계)	3	4,090	2	2,273	2	1,183	7	7,546

※ 신규 및 보완사업에 대하여는 업체별 지원액 별도 통보

〈추진체계〉

가. 사업주관기관:시·도지사

나. 사업담당부서

○농림부 : 농림부 축산경영과(02-504-9434~5)

○시·도 : 도 축산과, 광역시 농정과(축산계)

○시·군·자치구 : 축산과 또는 농산과(축산계)

다. 사업시행

(1) 사업계획의 수립

○기존보완과 신규를 포함하여 사업계획서에 계열화 요소별로 현재까지 갖춘 것, 연도별 새로 갖출 것을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

○계열사업완성년도, 연도별 계열농가 확보 및 처리두수, 연도별 시설설치계획, 시설별로 자금투자계획(촉발기금, 자부담구분)을 명시

○사업추진규모

-닭(육계) : 연간 육계 생산·처리능력 4,000천수이상(종계40천수×100수), 농가확보 : 25호이상

○사업추진기간내 확보해야 할 사항

- 닭(육계) : 상기 규모이상의 병아리를 생산·공급할 수 있는 종계장과 부화장(계약공급의 경우 3년이상 장기계약을 하여야 함)

○생산한 축산물에 대한 상표등록 또는 품질인증 등을 실시하여 자기상표(교유브랜드)로 판매할 수 있어야 함.

○계열농가에 대한 경영 및 기술지도 요원확보

-축산기사 2급이상 자격소지자 등 전문경영 및 기술지도요원 2명이상을 확보 하여야 함.

○사업계획의 조정 : 축산기술연구소 또는 예산심의과정에서 사업계획 조정 및 확정

〈행정사항〉

가. 사후관리

○ 사업목표달성 여부점검

- 시설계획 및 사업목표 달성 등 규정된 사항 이행 여부

- 계열농가 및 계열주체의 경영 지도

-규격품 및 고품질 축산물생산을 위한 기술개발

- 생산비 및 유통마진 절감 추진

○지원자금의 집행 및 사후관리

- 확정된 사업계획대로 매년사업이 추진 않될 경우에는 3개월이내에 변경승인을 받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차년도 예산지원에서 제외하고 기 지원자금은 회수할 수 있음

·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변경여부를 결정하여야 함

- 사후관리는 '91년이후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대상자로 하며 자금상환이 완료되는 연도까지로

표5. 가축계열화사업자금 지원대상 및 내용

구분	지원범위	지원조건	비고
1. 생산기반시설	·종계장, 자돈 및 모든 생산 시설, 종돈장, 부화장 시설	-사업비의 70%이내 -연리 8%(축협 등 생산자단체 5% -5년 거치 10년균분 상환	
2. 계열주체 사육시설	·계열주체직영 비육돈·육계 사육시설	''	수출용 가축을 직접도축, 도계 및 가공하여 수출하는 계열주체만 지원
3. 계열농가 사육시설	-축사 및 부대건물 -사육시설	-사업비의 70%이내 -연리 5% -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	축종별 경쟁력제고 사업지원내용과 동일
4. 도계시설	-도계장 및 부대건물 (오폐수처리시설포함)	-사업비의 70%이내 -연리 8%(축협 등 생산자단체 5% -5년 거치 10년균분 상환	수출용닭을(2.5~3.0kg)도계하여 수출하는 주체에만 지원
5. 가공시설 (육가공공장등)	-가공장시설 및 부대건물 (오폐수처리시설포함)	''	
6. 유통·판매 시설	-유통·판매장 및 부대건물 -냉장·냉동·물류등 유통·판매시설	''	입대료는 제외
7. 사료제조시설		자부담으로 추진	
8. 기타		''	

: 1.20일

5. '98년 사업신청 및 대상자선정 안내

가. 신청서 제출기관 : 시·군

나. 신청절차 : 사업계획서 작성  
→ 1월 31일까지 관할 시·군 → 시·도 → 축산기술연구소 → 시·도(적합 또는 보완된 사업계획) → 예산신청

다. 대상자선정

(1)신청자격

○축산법, 축협법 등 관련규정에 의거 허가·등록된 축산업, 부화업 종축업, 도축(도계)업, 육가공업, 배합사료제조업을 하는 자 및 축산업협동조합(지역, 업종) 및 중앙회

- 축산관련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자기 사업장 건설대상 토지가 확보(사전심사후, 예산신청전까지)된자

-기타

·지역주민의 민원발생 소지가 없

어야 함(주민동의서 첨부)

·융자금에 대한 담보능력 및 자부담, 운영자금에 대한 자금능력이 있어야 함.

·육계의 경우 2년이상 자체 계열화사업실적(사업신청 전년도 계약생산 실적이 50만수 이상)이 있어야 한다.

(2)우선순위

○사전심사결과에 따라 신청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

- 완전계열화사업을 하고자 하는자
- 생산물을 직접 수출하고자 하는 자
- 자부담을 많이 하고자 하는 자
- 조합 형태로 계열화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
- 기타의 경우

(3) 신청절차

한다.

-지원자금의 집행 및 사후관리는 축산발전기금운영 규정, 농특회계용자 사후관리지침, 농림부사업 자금관리 기본규정에 의한다.

·대출금을 사업시행지침이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때, 대출금을 농림업이외의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농림업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게 한 때,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한때 등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은 축협중앙회, 사업주관기관 및 기금관리자에게 통지하고 대출금을 회수하여야 한다.

사업자금의 부당사용사유가 발생한때에는 사업자금을 받은 자에게 자원금액의 과다에 따라 일정기간 사업자금을 지원해서는 아니된다.

나. 보고

○계열사업대상자별 추진상황(별지 제7호 서식 생략) 7.20, 1.20일

○계열농가 협의체 구성현황(별지 제8호 서식 생략)

○계열사업자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[별지 제1호서식(생략)]에 의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사업장 소재지의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○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사업자격요건 및 사업장 건설에 따른 법적제한 사항 등을 검토하여 시·군·구 농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·도지사에게 신청한다.

○시·도지사는 이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는 의견서를 붙여 사업예산 신청 1개월이전까지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장의 사전심사를 받아 적합한 경우 농림부장관에게 예산을 신청하여야 한다.

**(4) 계열화사업자 지정**

○사업주관기관은 자금지원계획이 확정되면 축산법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가축계열화 사업자로 지정한다.

○본 사업추진요령 시행이전에 가축계열화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지원받은 자는 본 요령에 의하여 계열사업자로 지정을 받는 것으로 본다.

**라. 기타사항**

- 대상축종 : 돼지, 육계(산란계 신규는 제외됨)
- '97사업추진요령에 준하되 세부사업별 지원비율, 단가 등 지원방법은 변경될 수 있음

**가공판매시설 및 운영(공공)  
(계란가공시설)**

-농림부 축산물유통과-

**1. 목적**

- 계란을 가공하여 소비형태의 다양화를 통한 소비 확대
- 상인중심으로 되어있는 계란유통을 가공품생산을 통한 견제기능 부여

**2. 추진방향**

○계란의 유통단계 축소 및 계란의 상품성제고를 위

해 계란가공유통시설 지원확대

**3. 연도별 지원계획(표6)**

**표6. 연차별 지원계획**

	계	'92~'95	'96	'97 예산안	'98	'99~2004
사업량	10개소	2	3	1	3	
계	백만원 24,596	3,295	8,672	4,056	3,000	
사업 비	16,191	5,300	5,952	2,839	2,100	
보조 융자 지방비 자부담	8,405	3,568	2,720	1,217	900	

**4. '97년도 사업시행요령**

**<사업개요>**

**가. 사업내용**

**(1) 지원배경**

- 계란은 가공소비형태가 단순하여 수급에 탄력적으로 대처하지 못함
- 가공유통분야에 대한 참여도가 극히 낮아 생산물에 대한 소비확대 및 상품개발 소홀

**(2) 사업개요**

**○사업내용**

-부지구입비를 제외한 건물 가공시설, 냉장(동)시설, 폐수, 발전시설 등

**○지원대상**

-생산자단체, 산란계 계열업체, 계란가공업체, 농가 등

**○지원규모 및 조건**

- 지원규모 : 총 사업비의 70%이내 융자
- 지원조건 : 5년거치 10년 상환, 연리 5%(계란가공업체 8%)

**나. '97 사업비(예산)내용**

**표7. '97 사업비 (예산)내용**

내 용	사업량	사 업 비					
		사업비 합계	예산안(축발기금)			지방비	자부담
			계	보조	융자		
계	개소 1	백만원 4,056	2,839	-	2,839	-	1,217

<추진체계>

- 가. 사업주관기관 : 시·도
- 나. 사업담당부서

- 농림부 : 축산물유통과(02)504-9436
- 시·도 : 축산과 (농정과)
- 시·군 자치구 : 축산과(산업과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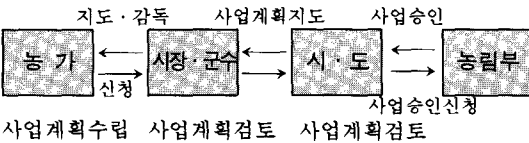
다. 대상자 선정

(1)선정기준 및 우선순위

○사업대상자 선정시 다음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결정

- ① 계란의 자가생산량이 많은 업체(농가 및 생산자 단체)
- ② 판매망(판매계획)을 다수 확보한 업체(농가 및 생산자 단체)
- ③ 계란(계란가공품)에 대해 자체브랜드를 등록(특허청)하여 사용하고 있거나 브랜드 등록계획이 있는 업체(농가 및 생산자단체)

(2)선정절차



라. 사업시행

- 사업계획수립
- 사업계획수립 및 시행을 해당 시·군의 지도하에 추진
- 사업기간 : 1~2년
- 사후관리 : 시·도지사
- 보고 : 사업추진실적은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하고, 사업완료보고는 완료후 15일 이내

**축산물 품질향상 및 안전성 강화(공공)  
(재래닭 고품질 육용화)**

-농림부 축산물 유통과-

1. 목적

- 새로운 농가소득원 개발 및 농가소득 증대
- 재래닭의 고유 유전자원 보존

2. 추진방향

- 재래닭 고유의 육질을 유지하면서 생산능력 향상
- 생산자단체, 연구기관 및 학계의 공동참여로 조속한 성과 가시화
- 연구개발된 재래닭 종계의 농가보급

3. 연도별 지원계획(표8)

표8. 연차별 지원계획 (단위:백만원)

	계	'92~'95	'96	'97	'98	'99~2004
사업량	4과제	4	(계속)	(계속)	-	-
사업비	계	792	329	260	203	-
보조						
지부담		792	329	260	203	

4. '97년도 사업시행요령

<사업개요>

가. 사업내용

- (1) 사업추진 배경
  - 재래닭(토종닭)에 대한 소비증가
  - 재래닭 사육 및 희망농가 증가
  - 재래닭 소비자들도 의심과 궁금증을 가진 상태에서 소비
  - 대한양계협회를 중심으로 재래닭육용화 및 소득자원화방안 수립후 지원요청
- (2) 사업추진 목표 및 활용방안
  - 재래닭의 외모적, 유전적, 면역학적, 생화학적 특성 구명
  - 재래닭의 생산성 및 경제성 제고
  - 재래닭 고유의 육질을 유지하면서, 외국닭과 교잡으로 종계 및 실용계의 생산능력 향상
  - 소비자에 대한 신뢰도 제고로 재래닭 생산·유통체계 확립
  - 재래닭에 대한 품질인증, 브랜드화로 새로운 농가소득원 확보

- (3) 사업기간 : '94~'97
  - (4) 사업과제 및 추진기간
    - 재래닭의 생산능력 평가 및 품종기준 설정 : '94~'97
    - 우량교배조합 선발 : '95~'97
    - 실용계의 사양관리체계 확립 : '96~'97
    - 재래닭의 소비형태 조사 : '97
  - (5) 지원내용
    - 재래닭 육용화사업에 필요한 가축구입비, 시설비, 재료비, 인건비 등 지원
  - (6) 지원대상 및 조건
    - 지원대상 : (사)대한양계협회
    - 지원조건 : 축산발전기금 사업비(보조)
- 나. '97사업비(예산) 내용(표9)

표9. '97사업비(예산)내용 (단위:백만원)

내 용	사업량	사 업 비					
		합 계	축산발전기금			지방비	자부담
			소 계	용 자	보 조		
기금사업비	6항목	203	203	203			
재래닭의 계통 육성및능력검정	1	89	89	89			
교배종의 사양 관리기준 설정	1	34	34	34			
실용계의 신육 및육질타성구명	3	40	40	40			
재래닭의 생산 물의 소비형태 조사	1	40	40	40			

〈추진체계〉

- 가. 사업주관기관 : 농진청 축산기술연구소
  - 사업시행기관 : 대한양계협회
  - 협조기관('94~'97) : 축산기술연구소, 수의과학연구소, 서울대농대·가금학회 및 재래닭 보존연구회 등
- 나. 사업담당부서
  - 농림부 축산국 축산정책과(전화 02-504-9431~3)
  -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(전화 수원 0331-292-4511, 성환 0417-581-2081)
  - 대한양계협회 전화 02-588-7651
- 다. 사업시행
  - (1) 사업계획수립
    - 대한양계협회장은 협조기관과 협의하여 사업비

- 집행계획 등 세부사업추진계획서를 수립하고 농림부장관에 승인요청
- (2) 사업추진방법
  - 대한양계협회장은 당해년도 사업계획 확정시 필요할 경우 연구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분담 추진
  - 시험축 확보는 국내연구기관, 민간업체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래닭 확보
  - 시험기간 중의 생산물은 판매하여 축산발전기금에 납입
- (3) 사업비 지원방법
  - 축협중앙회장은 대한양계협회장의 분기별 자금신청에 의거 개산블로 우선 지급하고 다음 분기초 개산블 지급시 전분기분은 정산

〈행정사항〉

- 가. 사후관리
  - 대한양계협장은 사업계획에 의한 자금지원 및 추진상황 등을 지도·감독
- 나. 보고(대한양계협회장→가축개량총괄기관장)
  - '97세부사업추진계획 : '97.2월말까지
  - 사업추진실적 : 매분기 익월말까지

**축산경영여건 개선(공공)  
축산자조금**

-농림부 축산경영과-

**1. 목적**

- 생산자단체의 자율적인 사육조절 및 소비촉진 홍보, 조사연구, 소비자 및 생산자교육 등을 통한 생산성향상을 기하고 축산물수급 및 가격안정도모

**2. 추진방향**

- 생산자단체의 자율적인 사육조절 및 소비촉진 등에 의한 축산물가격안정 유도
- 축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 도모

**3. '97사업시행요령**



표 10. 연차별 지원계획 (단위: 백만원)

구분	사업량	사업비(축발기금)			비고
		합계	보조	자부담	
자조금 지원사업	개소 2	600	200	400	

<사업개요>

가. 사업주관기관 : 농림부

나. 사업내용

○사업대상자

- 축산업 관련 생산자단체로서 자조금의 조성방법과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생산자단체

○사업비지원

○지원조건 및 방법

- 연도별로 자조금 사업운영계획(안)을 수립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승인신청

- 자조금 사업 운영계획을 승인받은 생산자단체가 조성한 자조금 조성액의 100분의 50범위내에서 보조금지급

- 축협중앙회장은 생산자단체가 조성한 자조금을 확인하여 보조금교부 및 지급

<행정사항>

○보고

- 사업운영계획 : 1월말까지

- 사업추진실적보고 : 익년 1월말까지

- 자조금에 의한 행사추진계획시 : 수시보고

**축산경영여건개선(공공)  
(가축박람회)**

농림부 축산경영과

1. 목적

○닭고기, 계란의 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신기술 보급

○국내의 양계관련 기자재 등의 비교전시를 통한 상호기술 및 정보교환

○양계산물의 품질고급화로 양계산물의 홍보 및 소비촉진

2. 기본방향

○ 생산자, 소비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 추진

○ 점진적으로 수입사업이 되도록 추진

3. '97사업 시행요령

<사업개요>

○사업주관기관 : 농림부

○사업시행기관 : (사)대한양계협회

○사업기관 : '97년중(격년제로 실시)

○사업내용

- 전시행사 : 기자재 및 시설전시, 양계사육시설, 닭 및 양계산물 등

- 홍보행사 : 양계산물, 전시판매 및 시식회, 소비홍보 포스터 공모, 우수양계인선발대회, 글짓기대회 등

- 양계관련 세미나, 양계인대회 등

○지원내용 : 행사비의 일부보조

○지원금액 : 95백만원

<행정사항>

○사업주관기관은 세부추진계획 수립 보고

○양계박람회 추진실적 보고(완료후 30일 이내)

○사업안내기관 : 농림부 축산경영과(02-500-2689)

**종축등록 및 검정(공공)  
(닭 경제능력검정)**

농림부 축산정책과

1. 목적

○ 종계 자질개량 및 경제능력 향상

- 우량 종계 도입유도 및 양계농가에 종계 선택지표 제공
- 양계산물 수입자유화에 대비한 양계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

## 2 추진방향

- 검종소 검정과 일반검종의 병행 추진
- 검정방법의 공정화, 전문요원의 전문화, 검정시설 및 장비의 현대화
- 검정결과의 공표를 통한 양계농가의 종계구입 편의 증진

표 11. 연차별 지원계획 (단위:백만원)

구분	계	92~95	96	'97 (예산안)	'98	99~2004	
사업량	438천수	60	42	42	42	252	
사업비	계	72,611	1,414	194	303	100	600
	보조 자부담	72,611	1,414	194	303	100	600

## 3 연도별 지원계획(표11)

## 4. '97년도 사업시행요령

### <사업개요>

#### (1) 검정사업계획

○ 시·도지사에 종계장 등록을 필한 업체를 대상으로 검정소 검정사업과 일반검정사업을 병행하여 추진

○ 검정소 : 42천수(산란계 30, 육계 12)

○ 일반검정 : 희망농장 및 물량에 한함.

#### (2) 지원내용

○ 검정사료비, 검정시설 및 장비 등 검정사업비의 부족분에 대하여 지원

#### (3)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

○ 지원대상 : (사)대한양계협회 닭경제능력검정소

○ 지원조건 : 축발기금 보조

나. '97사업비(예산)내용(표12)

표 12. '97사업비 (예산)내용 (단위:백만원)

내용별	사업량	사업비(백만원)					
		합계	축산발전기금			지방비	자부담
			소계	보조	용자		
보조사업비계	42천수	671	303	303			
검정사업비 보조		284	100	100			
시설개보수		387	203	203			

### <추진체계>

가. 사업주관기관 : 농진청 축산기술연구소

○ 사업시행기관 : 대한양계협회

나. 사업담당부서

○ 농림부축산국 축산정책과(전화 02-504-9431~3)

○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 축육개발부(전화 0417-581-2081)

○ 대한양계협회(협회 02-588-7561, 검정소 0334-675-7139)

다. 사업시행

○ 사업계획수립

- 대한양계협회장은 검정계획 및 사업비 집행계획 등 세부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장관에 승인요청

○ 종계검정방법

- 닭 검정요령(농림부 고시 제87-42호, '87.21)에 의하여 실시

○ 사업비 지원방법

- 검정사료비, 검정시설 및 장비 등 사업비지원은 사업추진 진도에 따라 축협중앙회장이 보조금 지원

### <행정사항>

가. 사후관리

○ 검정결과는 축산관계 전문지 등을 통하여 농장별 계종별 검정성적을 공표

나. 보고(대한양계협회장 → 가축개발총괄관장)

○ '97닭경제능력검정 세부사업추진계획 : '97. 2월 말까지

○ 사업추진 실적 : 매분기 익월말까지